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43 호 2022. 5. 12.(목)

훈 령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훈령 제33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1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12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1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13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6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632호[월촌의료재단 병원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1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649호[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신고에 따른 열람 공고] 24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임채오

2022년 5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훈령 제3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3인”을 “3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를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을 “의원연구회 등록 신청시 별지 제2호서식의”로, “의장에게 의원연구회 등록 신청 시 첨부”를 “첨부하여 의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계획서”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을 “계획서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 중 “제9조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중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1~12개월”을 “1~1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의원연구회의 연구결과 보고서는 연구활동기간 만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연구결과 보고서는 전 의원이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책자로 발간 배포할 수 있다.

제9조제3호 중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회 등록신청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회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대표의원 :
2. 연구목적 또는 주제 :
3. 참여의원 :

연 번	성 명	서 명	비 고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구회 활동계획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 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제 출 자	대표자 (인)	
연구 내용	주 제	
	목 적	
	세부 시행계획	※ 별지 작성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회 지 원 사 항	예산부분	
	기타 지원부분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활동 지원사항 통지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 지원사항을 통지합니다.

대 표 자	
연구주제 또는 목적	
지 원 사 항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의 장

[별지 제4호서식]

연구계획 변경신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연구계획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의원연구회명		
대표자		
연구계획	당초	
	변경	
변경일	년	월 일
변경사유		
비고		

년 월 일

신 청 인 ○○연구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구성) ① 이 규정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회(이하 “의원연구회”라 한다)는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정책 등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u>3인</u> 이상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회사무과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p>	<p>제2조(구성) ① ----- ----- ----- ----- <u>3명</u> -----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등록) ① 의원이 제2조제1항에 <u>의한</u> 의원연구회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p>	<p>제3조(등록) ① ----- -- <u>따른</u> ----- ----- <u>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회</u> ----- -----.</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연구회의 지원사항 등) ①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u>의한</u> 의원연구회에 연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에서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5조(연구회의 지원사항 등) ① -- ----- <u>따라</u>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원연구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u>의한</u> 연구회 <u>활동계획서</u>(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u>의장에게 의원연구회 등록 신청 시 첨부</u>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 <u>의원연구회 등록 신청시 별지 제2호서식의</u> ----- - <u>첨부하여 의장에게</u> ----- -----.</p>

④ 의장은 제3항의 “계획서”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사항을 결정 통지한다.

⑤·⑥ (생략)

제6조(의원연구회의 활동범위 등) 의원연구회의 활동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지방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제7조(연구계획의 변경) 등록된 의원연구회가 연구주제나 목적, 활동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연구계획 변경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연구결과 보고서 제출) ① 연구주제나 목적에 관한 활동기간은 1~12개월 단위로 한다. 다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회는 매 활동기간 말일까지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출된 연구결과 보고서는 전 의원이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책자로 발간 배포할 수 있다.

제9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회

④ ----- 계획서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

⑤·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원연구회의 활동범위 등) -

----- 제13조에 따른 -----

-----.

제7조(연구계획의 변경) -----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

-----.

제8조(연구결과 보고서 제출) ① -

1~11개월 -----.

-----.

② 의원연구회의 연구결과 보고서는 연구활동기간 만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연구결과 보고서는 전 의원이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책자로 발간 배포할 수 있다.

제9조(등록취소) -----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2. (생 략)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현행과 같음)

3 .

않은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별지 제2호]</u></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회 활동계획서</p> <p>「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 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별지 제2호서식]</u></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회 활동계획서</p> <p>「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 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제 출 자</th> <th style="width: 85%;">대표자 (인)</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연구 내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 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목 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세부 시행계획 ※ 별지 작성</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구회 지원사항</td> <td style="text-align: center;">예산부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 지원부분</td> </tr> </tbody> </table>	제 출 자	대표자 (인)	연구 내용	주 제	목 적	세부 시행계획 ※ 별지 작성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회 지원사항	예산부분		기타 지원부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제 출 자</th> <th style="width: 85%;">대표자 (인)</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연구 내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 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목 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세부 시행계획 ※ 별지 작성</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구회 지원사항</td> <td style="text-align: center;">예산부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 지원부분</td> </tr> </tbody> </table>	제 출 자	대표자 (인)	연구 내용	주 제	목 적	세부 시행계획 ※ 별지 작성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회 지원사항	예산부분		기타 지원부분
제 출 자	대표자 (인)																								
연구 내용	주 제																								
	목 적																								
	세부 시행계획 ※ 별지 작성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회 지원사항	예산부분																								
	기타 지원부분																								
제 출 자	대표자 (인)																								
연구 내용	주 제																								
	목 적																								
	세부 시행계획 ※ 별지 작성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회 지원사항	예산부분																								
	기타 지원부분																								
<p>년 월 일</p> <p>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p>	<p>년 월 일</p> <p>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p>																								

현 행	개 정 안												
<p><u>[별지 제3호]</u></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활동 지원사항 통지서</p> <p>「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 <u>제5조제4항의</u> <u>규정에 의하여</u>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 지원사항을 통지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20px;">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대 표 자</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구주제 또는 목적</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 원 사 항</td> <td></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의 장</p>	대 표 자		연구주제 또는 목적		지 원 사 항		<p><u>[별지 제3호서식]</u></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활동 지원사항 통지서</p> <p>「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 <u>제5조제4항의</u> <u>규정에 따라</u>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 지원사항을 통지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20px;">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대 표 자</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구주제 또는 목적</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 원 사 항</td> <td></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의 장</p>	대 표 자		연구주제 또는 목적		지 원 사 항	
대 표 자													
연구주제 또는 목적													
지 원 사 항													
대 표 자													
연구주제 또는 목적													
지 원 사 항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4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계획 변경신고서</p> <p>「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연구계획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p>	<p>[별지 제4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계획 변경신고서</p> <p>「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연구계획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의원연구회명</td> <td colspan="3"></td> </tr> <tr> <td>대표자</td> <td colspan="3"></td> </tr> <tr> <td rowspan="2">연구계획</td> <td style="width: 10%;">당초</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r> <tr> <td>변경</td> <td></td> <td></td> </tr> <tr> <td>변경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td> </tr> <tr> <td>변경사유</td> <td colspan="3"></td> </tr> <tr> <td>비고</td> <td colspan="3"></td> </tr> </table>	의원연구회명				대표자				연구계획	당초			변경			변경일	년	월	일	변경사유				비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의원연구회명</td> <td colspan="3"></td> </tr> <tr> <td>대표자</td> <td colspan="3"></td> </tr> <tr> <td rowspan="2">연구계획</td> <td style="width: 10%;">당초</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r> <tr> <td>변경</td> <td></td> <td></td> </tr> <tr> <td>변경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td> </tr> <tr> <td>변경사유</td> <td colspan="3"></td> </tr> <tr> <td>비고</td> <td colspan="3"></td> </tr> </table>	의원연구회명				대표자				연구계획	당초			변경			변경일	년	월	일	변경사유				비고			
의원연구회명																																																							
대표자																																																							
연구계획	당초																																																						
	변경																																																						
변경일	년	월	일																																																				
변경사유																																																							
비고																																																							
의원연구회명																																																							
대표자																																																							
연구계획	당초																																																						
	변경																																																						
변경일	년	월	일																																																				
변경사유																																																							
비고																																																							
<p>년 월 일</p> <p>신청인 ○○연구회 대표자: (인)</p> <p>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p>	<p>년 월 일</p> <p>신청인 ○○연구회 대표자: (인)</p> <p>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p>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의원연구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거 조항 변경(안 제6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11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2. 5. 12.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의 설치 (오수관로의 매설)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745-35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10.8m²
 - 나. 기 간 : 2022. 5. 12. ~ 2022. 5. 2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이*철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매*로6*, 10*동1*01호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113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울동5길 10	효문동 41-2	2022. 5. 12.	건축물 멸실
아랫울동2길 26-13	양정동 37-3	2022. 5. 12.	건축물 멸실
아랫울동1길 4	양정동 125-16	2022. 5. 12.	건축물 멸실
명촌1길 7-12	진장동 878	2022. 5. 12.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5.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632호

월촌의료재단 병원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기간 : 2022. 5. 10.(화) ~ 2022. 5. 20.(금)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p>가. 사 업 명 : 월촌의료재단 병원신축공사</p> <p>나. 사업주체 : 월촌의료재단</p> <p>다. 시 공 자 : ㈜채운토건</p> <p>라. 설 계 자 : ㈜다담건축사사무소</p> <p>마. 감 리 자 : ㈜다담건축사사무소</p> <p>바.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울산 북구 호계동 988-2 ○ 대지면적 : 951.7M2 ○ 연 면 적 : 2231.57M2 ○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 ○ 세 대 수 : ○ 공사기간 : 2022년 5월~2022년 12월 ○ 허 가 일 : 2022년 4월 1일 ○ 착공신고수리일 : ○ 공 사 비 : 3,777,500,000원(부가세별도) <p>사. 안전점검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비용 : 회당150만원 	<p>○ 예정가격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 평균금액</p>

3. 안전점검 내용

가. 수행예정표

항 목	횟 수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항타및항발기	2회	1,500,000	3,000,00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7]안전점검대가요율
흙막이	2회	1,500,000	3,000,000	
계			6,000,000	

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2. 05. 10.(화) 09: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2. 05. 20.(금) 11: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 : 2022. 05. 20.(금) 11: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바. 유의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약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86.745%)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5.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입찰가격 참가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2. 05. 20.(금) 11:00까지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유의사항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3)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열람 ·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2. 05. 23.(월) 18:00까지(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2) 자기평가표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자기평가표를 말함
- 3) 참여기술인의 최근 7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 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1) 이의신청은 6차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7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촬영·복사 불가)
 -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 가. 응모자격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328호\(2021. 3. 8.\)](#) 우리 구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등록한 업체로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나. 심사기준 : 지정신청한 참여기관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개찰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 1) 아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40점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40\text{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	6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 평점 = $60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합계	100점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함.**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 지정

4)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용역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5)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9.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일로부터 2일간(공휴일 제외)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하오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 사.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함.
- 아.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 차.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2종시설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 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당일까지도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14)로 문의바랍니다.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①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③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④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⑤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참 고 사 항>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649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신고에 따른 열람 공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의거, 『154kV 산하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신고되었는 바,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열람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사업개요

- 사업명 : 『154kV 산하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 변경사유
 - 가. 배전선로 인출계획 변경으로 인한 설비규모 변경
 - 나. 잔여지 매수에 따른 최종 사업면적 변경
- 변경내역
 - 가. 전원설비 사양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 개폐장치 - 25.8kV EGIS 12CCT	○ 개폐장치 - 25.8kV EGIS 8CCT	4CCT 감소

나. 사업구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55,724.4㎡ (변전소 8,400.4㎡, 송전선로 47,324㎡)	58,108.3㎡ (변전소 10,784.3㎡, 송전선로 47,324㎡)	2,383.9㎡ 증가

다. 기타 : 다른 항목 변경사항 없음

열람기간 : 2022. 5. 12. ~ 5. 27.(15일간)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게시

문의사항은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 051-604-5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